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8 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곽규택・이헌승・정성국

조승환 • 조배숙 • 백종헌

유상범 • 박준태 • 주진우

장동혁 · 송석준 · 정연욱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단체로,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,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,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35조의2 신설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법인의 설립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등록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·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5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
	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
	체는 등록법인의 설립・운영
	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
	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
	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
	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
	나 공유재산을 등록법인에 무
	<u>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</u>
	하게 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
	•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
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